

용인시 과·소업무 지도담당 규정

제정	2005. 10. 5	훈령	제206호
개정	2006. 10. 13	훈령	제241호
	2006. 12. 29	훈령	제247호
	2007. 7. 1	훈령	제260호
	2008. 12. 29	훈령	제276호
	2009. 6. 26	훈령	제285호
	2009. 12. 29	훈령	제292호
일부개정	2010. 12. 17	훈령	제311호
	2013. 3. 8	훈령	제3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 본청의 국장으로 하여금 과·소의 행정을 종합지도·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 ① 국장의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은 별표와 같다.

② 과·소에 대하여 공통적인 지도사항과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도책임을 진다.

제3조(지도감독) 국장은 과·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전 직원의 근무상황, 지휘감독
2. 각종 업무의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
3. 일제지도를 요하는 사항과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4조(결재 또는 보고) 각 과·소장 및 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결재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소장 전결사항외의 중요한 사항
2. 과·소장 전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
3. 기타 과·소 운영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훈령 제24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훈령 제2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훈령 제2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훈령 제2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6 훈령 제28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훈령 제29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훈령 제31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8 훈령 제34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 3. 8>

용인시 과·소업무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

1. 지도담당

담당국장	담당관·과	비 고
자치행정국장	행정과, 정책기획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재정경제국장	재정법무과, 세정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복지국장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산업환경국장	농업정책과, 산림과, 환경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건설교통국장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 공보관, 감사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

2. 협조담당

구 분	사 업 소 명	비 고
문화복지국장	처인구·기흥구·수지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산업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사업소	